

제39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정기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9월8일(수)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2)
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3)
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1)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70)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91)
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78)
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90)
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94)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56)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65)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79)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66)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06)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24)
15.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의안번호 2103873)
16.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104509)
17.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의안번호 2106035)
1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896)
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10)
20.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838)
21.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504)
22.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0082)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77)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36)
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52)
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12)
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76)
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80)
2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47)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41)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01)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19)
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62)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36)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13)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12)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9)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2)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8)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99)
4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69)

### 상정된 안건

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2) ..... 3
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3) ..... 3
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1) ..... 3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70) ..... 3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91) ..... 3
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8) ..... 3
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90) ..... 3
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4) ..... 3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6) ..... 3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5) ..... 3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9) ..... 3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6) ..... 4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6) ..... 4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4) ..... 4
15.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3) ..... 4
16.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9) ..... 4
17.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5) ..... 4
1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6) ..... 4
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0) ..... 4
20. 주열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8) ..... 4
21.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4) ..... 4
22.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82) ..... 4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77) ..... 4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6) ..... 4
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52) ..... 4
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12) ..... 4
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76) ..... 4
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0) ..... 4
2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47) ..... 4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1) ..... 4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1) ..... 4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19) ..... 4
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2) ..... 4

|                                                         |   |
|---------------------------------------------------------|---|
|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36) .....    | 4 |
|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3) .....    | 4 |
|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2) .....    | 4 |
|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9) .....    | 4 |
|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2) .....     | 4 |
|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8) .....    | 4 |
|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9) .....    | 4 |
| 4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9) ..... | 4 |

(14시04분 개의)

○소위원장 강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기국회로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강훈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법률안이 충실히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회의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활용해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자소위원회에 처음 오신 두 분의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양금희 위원님과 조정훈 위원님 간단하게, 열심히 하시겠다는 각오의 말씀이라도 듣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양금희 위원 중기부에서 산업부 법안소위로 오게 된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입니다.

사실 산업부 쪽에 관심이 많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특허기술에 관한 부분에도 원래 관심이 많아서 이쪽의 법안심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어서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안녕하세요?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도 양금희 위원님처럼 중기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로 왔는데요. 실무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관련된 법률을 만들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롭지만 합의할 수 있도록, 오늘을 관리해야 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2)
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3)
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1)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70)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91)
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8)
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90)
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4)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6)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5)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9)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6)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6)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4)
15.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3)
16.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9)
17.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5)
1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6)
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0)
20.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8)
21.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4)
22.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82)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77)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6)
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52)
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12)
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76)
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0)
2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47)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1)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1)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19)
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2)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36)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3)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2)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9)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2)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8)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9)
4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9)

(14시08분)

○소위원장 강훈식 의사일정 제1항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1항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결은 내용상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특허청 심사가 완료되면 일괄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 1쪽입니다.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상표법·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세 개정법률안은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의 권리가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의 예외 사유를 현행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상황은 밑에 박스로 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특허출원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이 천재지

변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실무상으로도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권리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로 완화할 경우에 보다 많은 출원인의 권리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권리가 소멸될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 자동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우선권주장을 한 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그 분할출원도 자동으로 우선권주장을 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할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 원출원에서 우선권주장을 했더라도 분할출원 시 별도로 우선권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출원인의 실수로 우선권주장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분할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할출원 시 우선권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단순 실수로 권리 획득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서류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개의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개정되지 않은 조항에 대한 적용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상표, 디자인의 등록거절결정에 따른 재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기간 등을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특허의 경우 등록결정이 되었다더라도 설정등록 전이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재심사청구 기간연장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서 출원인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 조문과 연계되어 있는 조문을 함께 개정

하고 타 법 개정을 통한 실용신안법 개정 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일부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이 부분은 권리 이전에 따른 공유자의 통상실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개의 개정안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이 경매나 대금분할로 인해 공유물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기존에 권리를 공유하고 있는 자의 통상실시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특허권 등을 공유하고 있는 자의 일부가 그 권리를 경매에 부치게 되면 권리 전체가 타인에게 이전이 되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를 상실해서 더 이상 권리를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권리가 이전되더라도 공유물 분할청구 이전에 다른 공유자가 권리를 실시(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의 통상실시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공유자는 권리에 대하여 상당한 실시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법 개정안의 표현을 통일하는 내용들이 자구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특허법하고 디자인보호법은 1명의 권리자가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권리가 경매로 이전되더라도 통상실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표법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예 없어서 해당 내용을 신설하면서 공유자의 통상사용권 보호 규정도 함께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이 부분은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등록결정된 상표 또는 디자인이 설정등록되기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결정이 있는 후에는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없어서 무효 사유가 있는 권리가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설정등록 전까지 심사관이 명

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출원을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는 2017년도에 직권 재심사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47쪽의 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93조 제3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직권 재심사가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분리출원제도 도입 관련된 특허법 개정안입니다.

특허심사에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에서 거절결정이 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일부 청구항을 별도로 출원할 수 있는 분할출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이 있는 후에는 분할출원이 불가능합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특허 획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특허 가능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신속하게 특허권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타 법 개정으로 실용신안법에도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관련 조문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및 적용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특허법입니다. 특허법상 우선권주장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등록결정된 특허출원이 아직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허출원을 개량·추가한 발명을 새롭게 출원하면서 선출원에 대해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출원이 등록결정된 이후에도 새로운 발명을 출원하더라도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기존 특허출원을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하더라도 출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특허가 등록결정된 후에도 특허료를 납부해서 설정등록 전까지는 개량발명을

출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법체계상 우선권주장은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모두에 대해서 가능하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적용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디자인보호법입니다. 디자인등록출원 보정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심사청구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시기를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서 ‘재심사 청구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 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재심사 청구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보정서를 추가로 수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재심사 청구기간 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출원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법률 시행 당시 재심사 청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디자인보호법 관련입니다. 청산절차 진행에 따른 디자인권 소멸이 되는 경우 그 내용을 철회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에 대해서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에 권리가 소멸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허법과 상표법은 청산절차 진행에 따른 법인의 디자인권 소멸을 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까지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특허청장 김용래 먼저 이번에 송갑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3법은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권리를 구체화거나 또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그럼으로써 산업재산권 보유자의 권리를 강화해 주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신 송갑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출원인의 권리 회복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방향이 맞다 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적용례를 정비해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4페이지를 보시면 적용례를 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적용되는 것을 아직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자, 이 법 시행 당시 이 자에 대해서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리는 것이 맞겠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5페이지에 있는 8조·9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있는 상표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례를 분리하고 이 법 시행 당시에 정당한 사유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 것이 맞겠더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11페이지는 단순한 자구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이라고 하는 단순한 자구 정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용례를 다른 조로 분리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에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조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 자동인정제도도 마찬가지로 출원인이 사소한 실수로 우선권주장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정부로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라든지 절차 관련 규정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자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의 수정의견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건데 현행과 같은 부분, 개정안에는 4항부터 7항으로 돼 있는데 6항하고 7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고 4항 여기에 대해서만 적용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도 특허법이나 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자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페이지 부칙 제3조에 있는 부분도 자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페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취지 기재’라든지…… 취지를 기재하거나 증명서류 제출을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예 없애는 건데 이 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우선권주장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맞겠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4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자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일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2항의 적용례는 19페이지의 현행 유지에 따라 가지고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의 기간 연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원인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줘서 권리를 구제하는 그런 내용이 됨으로써 정부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부 몇 개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수정이 됐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문 체계를 고려해서 이 내용을 부칙 제8조로 이동을 해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행 제42조 2항의 30일은 115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하고 연계되는 거니까 이것은 115조가 개정이 되면 제4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변경될 수 있도록 두 기간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개정안에서 정부 수정으로 ‘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31페이지는 부칙 3조에 제42조 2항을 개정하면서 적용례도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32페이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문을 좀 분리해서 보정각하결정이라든지 거절결정이라든지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정각하라든지 거절결정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라든지 상품분류전환등록에 대해서도 적용례를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3페이지 디자인보호법 제49조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19조와 연계되는 부분이니깐 이 부분을 그것을 넣어서 이렇게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35페이지 부칙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49조제2항을 함께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정부 수정의견대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36페이지 개정안 제8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례를 11조하고 12조로 보정각하결정에 따른 적용례와 거절결정 또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적용례로 이렇게 나눠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권리 이전에 따른 공유자의 통상실시권 보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자기가 원치 않게 타인에게 권리 전체가 이전됐을 때 기존에 통상실시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부 자구라든지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자구를 이렇게 통일을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또 부칙 부분에 있어서도 자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구를 좀 통일하고 분할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를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제5조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 시점을 질권설정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기존에 질권자의 예측하지 못한 권리 제한 우려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1페이지, 디자인보호법 부분입니다.

개정안 제110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구라든지 공유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부분에서 자구 수정을 희망합니다. 부칙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구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42페이지 직권 재심사제도에 대한 도입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허나 실용신안법에는 이미 도입이 돼 있습니다라는 상표법이나 디자인법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서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부분에 있어서 준용 규정에 따른 직권 재심사임이 명확하게 자구를 좀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8페이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권 재심사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9페이지 부칙 내용에 있어서는 제193조제3항의 신설 조문의 적용을 제외하는 조문으로 적용례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불필요해서 이 부분을 정비하기를 희망합니다.

53페이지의 부칙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례가 불필요하므로 195조의2 이것은 제외하기를 희망합니다.

54페이지 분리출원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부분도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거절불복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에 대해서는 일종의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의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삭제하고 뒤로 옮기는 것을 희망합니다.

56페이지 보시면 현행 청구항 같은 경우는 청구항을 일부만 거절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를 이런 식으로, 정부 수정의견대로 바꾸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호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수정안대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준용에 따른 용어 정비인데요. 분리출원 부분뿐만이 아니라 분할과 분리출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부 수정의견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제4항에 대해서도 내용을 일괄적으로 분리출원의 파생, 분리출원이 또다른 것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부 수정의견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준용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부 수정의견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심사 청구기간 연장과 관련된 수정의견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꼭 3개월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수정의견대로 79조에 따라서 등록받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이라고 했는데 일단 분리출원이 앞에서 약칭으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이 그냥 분리출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84조에 대해서는 이것도 분할출원과 마찬가지로 즉시 심사에 대한 실체심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원료라든지 우선권주장 신청료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문 체계를 고려해서 이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수정의견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적용례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실용신안법에서도 분리출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괄적으로 부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수정의견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허법상 우선권주장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특허 등록결정을 하고 실제 돈을 내서 설정등록 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발명을 한 경우에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해 주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기술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발명자들이나 출원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부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우선권주장은 특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등록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꿔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용신안에 대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디자인등록출원 보정시기 확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출원자가 재심사 청구부터 기간이 남아 있을 동안에 본인이 추가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자에 대한 권리를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서 정부는 이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부 자구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이건 아까 특허법이나 상표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용례 분리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정기간 확대 적용 시점을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기간, 청구할 때가 아니라 청구기간으로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청산절차 진행에 따른 디자인권 소멸에 대해서는 이미 특허법과 상표법은 이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디자인법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 부분에서 76페이지 보시면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조 제목별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적용 대상을 디자인권으로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청장님, 앞으로는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특허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의 토론 시간이 많이 보장되어야 좋은 법이 나옵니다.

○특허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일반적인,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하셔도 되니까 꼭 필요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만 줄여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크게 이 법안이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아서요. 이견이 없으시면 계속 다음 논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김정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77쪽입니다.

김정호·이수진·이주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허법 3건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 2건입니다.

우선 특허법 개정안 3건은 현행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제출된 자료의 진위확인을 위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 개정안 2건은 특허법상 도입되는 제도를 준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안건별로 개정안의 취지 및 정부의 입장이 77페이지 하단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도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고요.

그다음에 79쪽에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논의했던 주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에도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주요 제시의견과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1쪽부터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정호·이수진 의원안입니다. 각각 대표발의하셨는데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를 지정하여 침해현장에 출입 후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개정안은 피조사자가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조사신청자의 주장을 진

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재효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법인은 1억, 종사자 같으면 50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증거자료를 대부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어서 권리자의 피해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특허침해소송의 증거편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여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의 개시요건을 강화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일정 수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청회와 법무부의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이수진 의원안입니다.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등 영업비밀 보호 강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실조사를 한 전문가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개정안은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밀유지명령의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비밀누설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수진 의원안입니다. 자료보전명령제도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당사자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자료보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효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자료의 제출을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필요한 자료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만 자료보전명령이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무부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이수진·이주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내용입니다. 자료제출명령제도의 개선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자료제출명령의 대상을 확대하고 당사자가 자료제출명령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의 내용이 약간씩 다른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제출대상이 되는 자료를 특정하기 어렵고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검증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제출명령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 자료의 목록을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제출범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소지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 내용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이주환 의원 발의안입니다. 증언녹취제도의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소송제도를 참고해서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소송기간 단축, 전문가가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로 활용됨으로써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당사자 일방이 법원의 증인신문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재효를 마련하고 제도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증인신문 주재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부칙입니다. 김정호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이주환 의원안이 각각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고 이수진 의원안은 이 법률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개정법률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

○특허청장 김용래 특허법 또한 특허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이 돼서 지난 5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동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정부의 수정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구나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내용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 그다음 이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먼저 조문별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는 동의를 합니다. 전문가에 대한 사실조사라 그러는 것은 특허 침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증거확보를 전문가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가져옴으로써 특허소송에 대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공청회나 이해관계자들이 해 놓은 의견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을 보시면 업계에서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이것이 남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 수정의견을 보시면 82·83페이지의 128조의3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에 대한 개시 요건을 아주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기존 안보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특히 83페이지에 있는 128조의3제4호를 보시면 이 법에서 정한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계가 우려했던 소송에 대한 남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는 단순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약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도 단순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 또한 업계에

서 얘기가 조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방어권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 수정의견에는 방어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문가가 조사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그에 대한 소송대리인이 현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정부 수정의견으로 담았습니다.

또 제9항에 보시면 방어권의 하나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것을 고려해서 제재효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종의 방어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88쪽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전문가 사실조사가 소 제기 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소가 제기되기 전에 내가 사실조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소를 제기하는, 이렇게 되면 소가 좀 남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부 수정의견으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업계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던 것이 이렇게 사실조사를 하면 전문가가 와서 사무실이나 공장에 와서 볼 텐데, 거기에 있는 비밀들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유출을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개정안에는 1년 정도의 약한 제재조항을 좀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동의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하나하나 좀 조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밀유지명령에 대해서는 기존에 빠져 있던 전문가도 비밀유지를 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9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무원으로서 의제를 함으로써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정부의 수정의견으로 담았습니다.

95페이지, 자료보전명령제도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없던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제기돼서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훼손하거나 멸실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프리징(freezing)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정부 수정의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에 나왔던 부분은 자료보전명령에 대해서, 원래 이수진 의원안에 보면 이게 법원이 직권이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자료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사실은 법원이 사전에 미리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알아서 이것을 직권으로 자료보전명령을 내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정부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법무부에서 제기가 된 것이 뭐냐면 자료보전을 그러면 한없이 하느냐, 기한을 어느 정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한을 1년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자료보전명령을 받으면 내가 일을 못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본을 제출하고 나머지 통상적인 업무는 방해받지 않도록 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정부 수정안에 포함을 시킨 것이 96·97페이지에 있는 정부의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사본을 만드는 것은 98페이지, 사본을 제출하고 평소에 쓰던 컴퓨터는 그냥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통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명령제도의 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단 동의를 하고, 몇 가지 수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명령을 했는데 당사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기 위한 사유를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수정의견에 넣어 왔습니다.

104페이지, 증언녹취제도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이주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의 검증 부분에 있어서 제3자가 제출한 자료도 함께 검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정부의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범위를 기존에는 법원에 있는 사무관·서기관·주사·주사보 해가지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했는데 증언녹취를 하는 주재자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서기관이나 사무관이외에도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라든지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사람들까지로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107페이지에 그 확대된 범위는 정부 수정의견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증인신문에 불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효를 두어서 증인 녹취록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정부 수정의견으로 109페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재효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정부 수정의견으로 제안했습니다.

다음, 부칙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 원래 김정호 의원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님 안에는 6개월로 돼 있었는데 업계나 학계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감안해서 2년 정도의 시간으로,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114페이지부터 있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 내용들은 앞의 말씀드린 특허법을 준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실용신안법은 아직 심사를 안 했는데 그것까지 의견을 주셨네요.

위원님들 말씀 듣기 전에 산업부에서 이 법안 관련해서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따로 주실 게 있으시면 저 증언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위원장님, 산업부 소재융합국장입니다.

특허법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산업부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특허법 개정법률안이 기술침해 방지하고 그다음에 특허기술 보호를 통해서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 업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도입되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에 대해서는 그간 특허청에서 업계 의견 수렴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 당국과 현장에서 느끼는 업계의 이야기는 사실 좀 간극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협회라든지 디스플레이협회 같이 큰, 업계를 총괄하는 협회의 입장에서 도입 취지는 인정하지만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현장이 국가 핵심기술 등 첨단기술 생산 현장이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사전적 견제 장치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서 업계에서는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특히 영업비밀 유출이라든지 생산 차질 또는 중단 등 만약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측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 중소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과의 특허소송 남발이 우려가 되는데, 특히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는 대응 능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막대한 영업 차질을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법 자체가 지난 11월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지만 오늘 법안소위 논의가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특허청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부 대안을 제시를 해 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게 업계에 아마 처음 회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안과 저희 산업부 생각은 특허청의 정부안과 그다음 업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시기를 조금 주셨으면, 숙려기간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요청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제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양금희 위원 지금 산업부에서 나오신……

○소위원장 강훈식 최우석 국장님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양금희 위원 제가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위 간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반도체산업에, 특히 소부장 쪽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허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출품이기는 하나, 삼성이나 SK처럼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공정 부분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부장 쪽으로서는 굉장히 약한 고리라고 하는데, 특히 오늘 나오서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에 특허 관련한 소송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사실 어저께 법안이 상정되어서 업계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원천기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일본·EU 등 선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 그 원천기술을 활용해서 소부장을 생산합니다마는 그쪽 업계의 이야기는 특허라는 게 속된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고리로 될 수가 있어서 제기되는 순간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기업들하고 협회에서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의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정부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청장님, 말씀을 좀 하십시오.

○특허청장 김용래 일단 산업부하고 특허청에서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산업부 국장이 보고를 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업계도 그렇고 산업부도 이제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특정 업종에서의 문제, 아까 양금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나 일부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차이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도입되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문제가 있다고 오늘 회람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산업부 국장 이야기는?

○특허청장 김용래 그게 개별 기업들이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피해를 보느냐 혹은 산업이 피해를 보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부는 전체적으로 섹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죽 나누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산업보다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안 들어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특허제도를 보면서, 전체 산업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특허법의 제1조에 보면, 특허법을 도입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산업발전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나 하면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양금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기술을 빼놓고 나면 사실은 장비나 소재에 있어서는 허약합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를 받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을 만든 것은 2001년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 갖고 20년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저희가 그러한 공격을 당했던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안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만들면 그것에 대한 원청업체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그쪽은 나름대로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이걸 가지고 하나의…… 국내에서 만들어지면 이 사람만 서플라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어디로 갖고 가느냐 하면 해외로 갖고 갑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 일본에서는 가격을 한 반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반 떨어뜨린 것을 가지고 국내 업계에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동안 국내가 죽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국내에 소부장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국내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 본 대부분의 기업들의 많은 문제가 뭐냐 하면, A라는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B라는 기업에 납품을 했는데 똑같은 것을 C라는 기업이 만듭니다. 여기서 정당한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갖고 가서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납품을 하면서, 이 사람이 여기 특허권을 침해했으면 가격이 낮아지겠지요. 그러면 낮게 받으면 여기한테도 또 낮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동안 투자했던 부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혁신할 의지가 없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대한민국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보거나 어려운 기업이 있을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밸류체인상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모든 나라로부터 경쟁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소재하고 장비가 제대로 크고자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실제로 발전할 수가 없다……

○소위원장 강훈식 잠깐만요. 말씀이 길어서, 잘라서 죄송한데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재융합산업정책관님이 모르시지 않을 것 아니에요?

○특허청장 김용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 주장을 똑같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특허청장 김용래 예.

○소위원장 강훈식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위원장님,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이왕 제도를 만들 때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소위원장 강훈식 신중하게 만들자?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예. 좀 꼼꼼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런 이야기를 특허청은 왜 안 하셨지요, 법안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특허청장 김용래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기간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처음에 6개월로 나왔던 것 2년으로 했는데 기업에 따라서는 2년보다 조금 더 있어야 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 정도입니다.

○양금희 위원 특허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어볼게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우리나라가 소부장 같은 경우에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서 속칭 베낀다고 하지요. 해 갖고 생산하는 소부장이 있는 퍼센티지도 있을 거고, 반대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한 것을 해외에 가서 발주를 해서 가지고 오거나 우리나라 다른 기업에 발주하는 퍼센티지 같은 것 등을 조사해 보셨나요?

○특허청장 김용래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소재나 장비에 있어 가지고 국내의 국산화율은 한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장비는 대부분 다 미국하고 일본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ASML이고요. 소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독일이나 일본으로부터 갖고 오는데 한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희 위원 80%가 해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약간 베끼고 아니면 좀 더 기술개발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현재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현재 현실상으로 봤을 때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문가들이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 과정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기업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조문인지를 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음 이어서 조정훈 위원님

하시고 이소영 위원님 하시는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조정훈 위원** 제가 지금 살짝 패러다임 시프트 중입니다. 제가 중소벤처소위에 있다가 산업부에 왔는데 언어도 좀 다르고 대표하는 업계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13일 공청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요. 그때 분위기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달랐었지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탈취해서 평생 쌓아 두었던 영업의 기술을 뺏긴 사장님들의 억울함이 절절히 흘러나왔고 어떤 위원님들도 그분들에 대한 억울함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없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산업부 관계자분께서, 제가 이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고.

그분들 업계의 영업이익이 돌이키기 어렵게 된다 이게 지금 이 특허법, 디스커버리 법안을 도입하는 바로 그 이유예요. 기술탈취가 너무 빈번히 발생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예.

○**조정훈 위원** 산업부의 업계는 대기업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소재융합산업정책관 최우석**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특허청장님도 얘기한 업계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업계라는데 저의 개인적인 귀에는 대기업으로만 들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표하고자 하는 그 업계가……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해외 소송의 위험이 그렇게 크냐?’라는 것에 대해서 ‘특허소송 제기가 증가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이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여러분들이 적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뒤에 자꾸 숨으려고 하십니까?

특허청장님, 제가 하나씩 하나씩 반박하겠습니다.

정부 수정의견인데요.

대부분 동의하지만 83페이지, ‘13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 이 법에서 정한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으면 이 증거조사 쓰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맨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겁니까?

○**특허청장 김용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특허법에는 자료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일단 자료를 보게 되고요.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진실한 게 아니면 그다음 단계는 지금 이주환 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아마 증인신문을 할 겁니다. 그 자료들을 가지고 양쪽이 모여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아마 이것을 쓰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이 4호 조항이 빠지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특허청장 김용래** 그러면 우선순위 없이 예를 들면 자료제출을 했는데 바로 사실조사를 한다든지, 증인신문이나 이렇게 같이도 할 수 있겠지마는 사실조사를 바로 하게 되는데 사실조사를 바로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정훈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하고 상대해서 사실조사 할 기회가 없고, 소를 할 때 제출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 사실조사를 하는 건데 이 법에서 정한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지를 증명해 내야 된다면 그러면 이 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특허청장 김용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도 자료제출을 했는데 이게 진실된 건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현장 가서 이 사람이 낸 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진짜 충실하게 다 냈다, 아마 거기서 끝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를 제기했던 기업이 ‘아, 이 정도의 자료면 내가 원하는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더 이상 신청을 안 하겠지요.

○**양의원영 위원** 그것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특허청장 김용래**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양의원영 위원** 그것을 이렇게 법에다가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하다……

○**조정훈 위원** 87페이지요. 지금 정부 수정의견에 단서를 신설하셨는데요. ‘다만, 법원은 조사를

받는 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 조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허청장 김용래** 예를 들면 특허 장치산업인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조사를 나간다 그러면 보통 2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현장조사가 이를 정도니까, 사전조사·사후정리까지 하면 현장조사가 이틀인데 예를 들면 석유화학이나 어떤 특정한 공정 같은 경우는 내가 조사를 해 버리면 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서면, 안에 스톱이 돼 버리면 공장이 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소송을 제기했던 것보다 내가 공장을 세움으로써 공장이 아예 그냥…… 다시 재가동하는 데 몇 달이 걸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공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런 공정을 하는 업체에서는 이 법안들을 피해 갈 수 있습니까?

○**특허청장 김용래**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그게 아니면 이주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양쪽에서 전문가가 모여 가지고 자료를 다 내놓든지 아니면 현장이 아니면, 예를 들면 공정이 아니라 공정과 관련돼 있는 서류를 공장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조정훈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

○**특허청장 김용래** 그러니까 사실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이 정부 수정의견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어떤 게 정당한 사유인지?

○**특허청장 김용래** 그런데 그것은 워낙 업종이 다양하니까……

○**조정훈 위원** 그러면 소를 당한 피고 변호인들은 무조건 이것을 쓰지 않을까요?

○**특허청장 김용래** 그런데요 위원님, 여기 앞에……

○**조정훈 위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요?

○**특허청장 김용래** 그것을 다 못 한 것이 뭐냐 하면요 업종이 워낙 다양하고 상황이 다 다르니까 거기 법에다가 이렇게 딱 넣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나고요?

○**특허청장 김용래**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사가.

○**조정훈 위원** 그다음에……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 발언을 좀 축약해서 해 주셔야지,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까요.

○**조정훈 위원** 예.

지금 정부 수정의견에 반대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88페이지, 11항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를 삭제해서 활용할 수 없다고 간 거지요?

○**특허청장 김용래** 예.

○**조정훈 위원** 즉,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삭제하신 거지요?

○**특허청장 김용래**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막대한 위험과 비용과 비즈니스 관계가 끊어질 위험을 다 고려하고 소를 제기할 때 이런 증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특허청장 김용래** 그래서 위원님, 여기 강력한 조항이 뭐냐 하면 사전에 프리징을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증거를 못 건들도록 프리징하는 조항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보전명령제도가?

○**조정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에 활용할 수 없잖아요, 이 조항을 삭제하면?

○**특허청장 김용래** 그리고 나서는 여기 나와 있는 증인신문이라든지 사실조사로, 일단 프리징이 되어 있으면 못 건들지 않습니까?

○**조정훈 위원** 아니, 못 건드려도 증거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자를 프리징해도 써야지 아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특허청장 김용래** 아니아니, 그것을 프리징을 하고 나서 이제 본소에 들어가면 그 프리징된 자료를, 하나도 안 건들어진 훼손되지 않은 자료를 그대로 다 갖고 와서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빼신 겁니까?

○**특허청장 김용래**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하고 소는 제기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남소라 그

러는 것이, 내가 소를 제기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것에 대한 것들의 조사를 다 해 버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자료보전명령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는 다 프리징되고 소에 들어가면 증인신문이라든지 혹은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기술을 뺏겼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조사 결과를 보고 변호사 자문도 구해 보고 소송에서 이길 만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소송을 시작할 텐데 그걸 볼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없애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를 프리징해 놓은 거지 조사를 하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특허청장 김용래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력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관계 때문에 마지막으로, 6개월을 2년으로 넘기자고 한 부칙조항인데 2년을 기다리면 뭐가 달라집니까?

○특허청장 김용래 일단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소기업 관계면 대기업들은 그것을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특허권을 가진 자와 침해자이기 때문에 꼭 대·중소기업 문제가 아니고요. 중소기업·중소기업 문제일 수도 있고 대기업·대기업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외국 기업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허……

○조정훈 위원 그래서 2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하기를 기다려서 2년이 필요한 겁니까?

○특허청장 김용래 발생이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무슨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특허청장 김용래 자료제출이라는 게 요즘같은 경우는 전자자료를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에 전자자료 내나라 그러면 도대체 내 컴퓨터 안의 무슨 자료를 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업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특허청에서 2년 동안 그런 것 교육하시겠다고요?

○특허청장 김용래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이것이 새로운 제도이지 않습니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

문에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정훈 위원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2년이나 걸리신다고 확신하십니까?

○특허청장 김용래 사실은 산업계 쪽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했는데 저희가 줄이고 줄이고 설득해서 한 게 2년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음, 이어서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서 나온 얘기 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조정훈 위원님이 끝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으로 의원안에서 왜 증거로서 사용 못 하게끔 규정을 삭제했느냐라고 하는 게 88페이지의 11항 말씀하시는 걸까요?

○조정훈 위원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1항에 따른 조사는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특허청이 삭제의견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증거로 활용 못 하게 하냐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정훈 위원 예.

○이소영 위원 청장님,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특허청장 김용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좀 고쳐 주시면 제가 또 보충설명을……

○이소영 위원 제가 이 제도를 편의상 디스커버리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영미법상의 디스커버리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업계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법 역사 120년 동안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 적이 없지요? 지금 이 법안을 제외하고서는 민사소송 일반에 전혀 그 제도가 없지요?

○특허청장 김용래 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소영 위원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128조의3의 증인신문,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인신문을 법정 외에서 당사자들끼리 하는 제도예요.

○특허청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우리나라 소송법 다른 데에 이 제도가 있나요?

○특허청장 김용래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없습니다. 그렇지요?

○특허청장 김용래 예,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이수진 의원님은 이 디스

커버리 제도, 우리 사법 역사상 단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었던 제도를 민사소송 일반에 도입을 하고 싶으셔서 이 11항을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려가 많으니까 법원에서 반대가 컸지요. 보통은 영미법계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대륙법계랑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허법에서만 일단 한번 해 보자고 해서 11항을 빼기로 한 것 아니었어요?

○특허청장 김용래 맞습니다. 지금 이거를 민사소송 전반으로 하게 되면 의료나 교통이나 위낙 많고 이것이 너무나 큰 변화가 있으니까 일단 기술에 대한 속도가 빠른 특허법부터 우선 하는 것이고, 사실 다른 나라들도 사실조사 제도나 이런 것들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민소법에는 없고 특허법에만 되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니, 보세요. 청장님, 128조의3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가 있잖아요. 전문가가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사실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특허청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게 증거인 거예요.

○특허청장 김용래 그렇지요.

○이소영 위원 그게 그 특허소송에서 증거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특허청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확인한 것에 대한 것도 하고 새로운 증거도 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증거지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은 전문가가 공장에 가서 막 다 뒤집어엮고 사실조사 하고 프리징(freezing) 해서 온 그 자료 받고 법정 외에서 자기들끼리 증인신문 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결과를 이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 수집 절차인 거예요. 그런 것이잖아요.

○특허청장 김용래 예.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11항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간에 증거로 쓰는 거예요. 다만 이수진 의원안의 11항, 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것을 특허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소송에 확대하고자 하시는 거였는데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 지금 협의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특허청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법안을 만들지 안 만들지 결정하

는 공적인 회의잖아요. 부처에서 그 정도 준비 수준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 질문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지금 이것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는 배심원 제도도 없지요. 그리고 영미법과 다르게 전문법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의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도입할 때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방어막을 많이 만들고 해야 저는 이 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앞서 여러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도 예전에 특허나 영업비밀소송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당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또는 이런 특허소송은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만 제기하는 것이다, 이것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 선악 구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이런 소송 제기해서 기술자료 빼내 가는 경우가 많아요. 판결문에 반도체 도면에 무슨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 적힌 것 당사자는 열람이 가능하잖아요. 판결문에 적힌 것 가지고 기술 유출하기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망한 중소기업도 많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 법상의 전문가조사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 하나 빼면 시체인, 그 기술이 전부인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한테 이 제도로 그 기술을 탈취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당하는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절반은 맞는 말인데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없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소송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많은 요소들하고 엮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도입할 때는 이 제도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제안하신 법안의 수정안 내용대로 통과가 되면 예상되는 가장 최악의 부작용이 어떤 상황 일까요?

○특허청장 김용래 일단은 산업계에서 나온 얘기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라 비슷한 것인데요.

일단 남소 우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 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한테 걸 것 아니냐’ 그게 이제 하나.

두 번째는 이것 해 가지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들 혹은 중소기업, 대기업들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영업비밀이 다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일련의 특허소송이……

○이소영 위원 아니요, 그냥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을 상정하시는 것인데 여쭙봤어요.

○특허청장 김용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공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장이 세울 수 없는 공장인 곳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번거로움이네요, 번거로움.

○특허청장 김용래 아니지요. 어떤 공장의 경우에는 사실조사가 꼭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에 있는 LNG 인수기지 탱크를 내가 좀 봐야겠다’ 그런데 탱크가 지금 뭐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천연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급이 안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를 봐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난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

○이소영 위원 제가 예상했던 답변하고 너무 달라서……

제가 상상하는 최악의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보겠습니다. 여기 대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대구택이라는 유한회사가 있어요. 대구에 있지요. 직원이 한 1300명 정도 되고요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투자한 중견기업입니다.

그 회사가 연간 매출액이 8000억 원인데 그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다이아몬드를 깎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절삭공구를 만들어서 8000억 원 버는 회사인데요 텅스텐하고 다른 중금속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섞는지 그 레시피 하나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그런데 경쟁업체 한국 사무소들이 그 레시피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 것 유출됐다, 침해했다, 애네가 뭘 훔쳐갔다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사실조사명령이 내려져요. 그런데 변리사, 변호사 이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것 보

여 달라고 해요. 그 회사는 그 기술 유출되면 그냥 끝장나는 회사예요. 1300명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되는 회사예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전문가 신뢰도가 가장 낮고 변호사, 변리사 믿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신뢰도가 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호사, 변리사가 그 회사 가 가지고 50년 동안, 40년 동안 유지해 온 그 영업비밀 자료를 다 봅니다, 복사도 하고 제공도 받고. 나중에 100억 원 줄 테니까 그것 팔라고 하는 기업이 생겨요. 이것 어떻게 방지하실 거예요? 이 법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이 뭐가 있어요?

○특허청장 김용래 위원님, 그런데 지금 어차피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징벌을 못 하니까 형사로 막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사소송이 지금 특허가 1년에 100건인데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형사는 350건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갖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형사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이 나와야지 그런 것을 강제로 볼 수가 있어요.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려면 법원에서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혐의의 상당성도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절한 기업, 예를 들면 죄가 없는, 별로 혐의가 없는 기업한테는 그런 영장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법안에서의 사실조사명령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원이 따져 볼지 모르겠지만 형사적인 강제 압수수색보다는 그 기준이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여쭙본 취지의 질문이 아니에요.

○특허청장 김용래 그것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소영 위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제가 공청회 때 이 질문을 했었지요. 이것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의원안에서는 이렇게 전문가랍시고 몇천억 원짜리 남의 기술자료를 다 봐 놓고 이것을 유출하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부안이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수정되어 있네요.

○특허청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거면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5년 이하의 징역이요. 실형 받은 것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특허청장 김용래** 특허법 안에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가 5년이기 때문에 그것이란 같이 맞춘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피고하고 피고의 대리인만 들어가는 것이지 원고는 못 들어갑니다.

○**이소영 위원** 원고는 못 들어가지요.

○**소위원장 강훈식** 이소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이소영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최악의 케이스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이 정부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나요?

○**특허청장 김용래**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원고도 못 들어가고 일단……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선의 조치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특허청장 김용래** 흠치려고 하는 사람, 옛날에 뭐 경찰 열 명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완전히 그렇게 한 사람까지 제가 거기를 완벽하게 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치를 다 마련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요?

○**특허청장 김용래** 예.

○**이소영 위원**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에 악의적인 이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동일한 것은 아니지만—필수적인 몰수·추징을 해요. 예컨대 그런 전문가가 기술자료 보고 100억 원 받고 그것을 팔았으면 적어도 100억 원을 추징하는 조항도 있고요. 본인이 본 이득의 몇 배의 범위 내에서 벌금도 굉장히 상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이름·주소 몇 개 넘긴 거랑 같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조항 하나 넣어 놓고 최선을 다했다? 저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장 김용래** 위원님,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5년 이하에 5000만 원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영업비밀인 내용,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빼 가지고 했을 때는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15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유출했을 때는 그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더 강한 것도 적용을 받으면 국내에 유출했을 때는 10년, 해외에 유출했을 때는 15년을 받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직 부처 간의 이견이 좀 더 조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의견 그만 들겠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의견 말고 요청이요, 요청.

○**소위원장 강훈식** 무슨 요청이요?

○**양의원영 위원** 자료……

○**소위원장 강훈식** 지금 제 말씀 끝나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양의원영 위원** 예.

○**소위원장 강훈식**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워낙 다양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의사일정 제7항과 8항도 이 앞에 부분의 특허법 개정 규정이 바뀔 때 준용해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특허청장 김용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래서 별도로 심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 하고 우리 양의원영 위원님 발언 기회 드려도 될까요?

○**양의원영 위원** 예.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양의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의원영 위원 양의원영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다음 논의를 위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특허소송을 다소 제기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저런 사안들이 발생할 우려가 양쪽이 다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특허청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나 관련된 업체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례 이런 것을 통해서 통계 분석하신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국내에 해당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기술탈취의 악순환의 사례들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그런 사례를 정리하신 것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특허청장 김용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좀 하나 말씀드리면 업체가 실태 조사를 하는데 당한 것을 잘 리포팅을 안 해 가지고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최선의 자료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특허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참에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계속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훈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소위원장 강훈식 아직 안 오셨나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제일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주환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방망이 두들겼으니까 오기 전까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예, 말씀하시지요.

○이주환 위원 조금 전에 특허법 관련해서 우리가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결론은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보류해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게는 오늘 토론 내용을 볼 때 저도 거기에 대부분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산업부에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우리가 법안을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까지도 거쳤어요.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또 법안 내용에 보면 부칙에 2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부에서 와서 오늘 한 발언 중에는 상당한 숙려기간을 달라는 말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저기 입장 다 살펴야 되니까 좀 머리가 아프니까 숙려기간을 달라고 했는데 최소한의 숙려기간은 어느 정도 주어졌다고 보고요.

오늘 내용에서 토론이 공방이 이어지다가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보류가 되는 건 모르겠는데 산업부가 나와서 ‘숙려기간을 달라’ 그리고 또 일부 위원들의 반대의견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제안이 있어서 바로 보류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상임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반대가 있다고, 좀 공방이 있다고 무조건 보류가 된 예는 사실 많지 않아요. 토론 중에 어떤 부분의 토론이 논리가 맞다 안 맞다를 따져서 그날, 다른 상임위는 보니까 표결까지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장 강훈식 그런 것 원하지 않잖아요?

○이주환 위원 원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산업부 직원 한 분 나와서 숙려기간을 달라는 그 말 한마디로 제 느낌에는 이게 여러 의견들을 다 들어 보지도 못하고 보류가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한번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알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께서 법도 발의하시고 그래서 애정이 또 있으실 텐데 조금 더 숙고하고 논의가 깊게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말씀대로 저도 두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특허청이 나가서 할 말씀은 아닌데 아무튼 앞으로 진행에 있어서 조금 더 진지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1항을, 맨 마지막 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인데요. 이것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소위에서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하자는 것이고 국가의 주요한 비전인 국가균형발전의 성과 확산 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논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게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이 ‘이의 없습니까?’ 이래 놓고 방망이를 안 때리고 넘어간 사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견이 서로 없으실 텐데 그래도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다른 균특법하고 다 같이 심의해서 한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4항까지 최인호 의원 등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9항부터 14항까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항부터 12항입니다.

최인호·서삼석·신정훈·홍문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주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이전 대상 기관 범위,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1쪽은 최인호 의원안인데 해당 공공기관이 설립한 부속 연구기관까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최인호 의원안은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그 소재지를 지방으로 우선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정관 인가 시 해당 기관의 소재 지역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서삼석 의원안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 선정 시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신정훈 의원안은 신설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입지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그리고 신정훈 의원안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3년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안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하는 경우에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최인호 의원안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방 이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인호 의원안입니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이 12항까지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13항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소위에서 논의가 일부 있었습니다.

우선 개정안 내용은 지역균형뉴딜의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이 있고요. 지역균형뉴딜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고 지역 여건 반영과 지역 특성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역균형뉴딜의 선정 절차, 지역균형뉴딜심의 위원회의 설치, 행·재정적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부칙에서는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항입니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법입니다. 이 법안은 오늘 소위에 처음 상정되는 법안입니다.

우선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권과 광역협력권의 정의를 삭제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초광역권으로 신설하며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및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시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협력권의 참여 대상을 시도를 비롯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여 단일화된 경제권역을 설정하게 되면 인구감소 및 노령화,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역량이 약화된 기초 지자체의 균형발전 및 규모의 경제 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는 초광역권 산업 개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초광역권 산업의 선정 주체는 시·도지사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주체는 권역을 넘어서는 유연한 협력·연계라는 개정안 취지를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법 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토대로 실질적인 초광역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립 주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와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초광역권이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국가 정책 방향과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협의 규정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삭제된 ‘기초생활권’ 개념의 경우에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의 지원 근거로 인용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광역권을 설정할 때 관할 시도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은 균특법상 시도 발전계획과 목적 등이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간 이해 상충에 대한 이견 조율이 어렵고 법정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및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초광역권 사업과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하단 부분의 ‘광역협력권’을 삭제하는 경우에 균특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도 수정하여 체계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현행 균형위의 성격을 자문위원회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로 개편을 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 관련 사무를 균형위로 이양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입지 선정 시 국가균형발전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혁신도시의 지정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균형위로 변경을 하며, 균형위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사무처를 두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균형위가 기존 타 부처 업무를 이양받아서 행정위원회로 기능을 하게 되면 타 부처와 지역 간 분산돼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균형위에 당연직 위원으

로 13개 중앙행정기관장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개정안은 균형발전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서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협의·조정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수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균형발전 업무의 특성상 행정위원회가 소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기획재정부는 행안부·산업부 등 여타 부처와 업무 중복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이후에 균특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의 입지 결정 및 건설·조정·운영 업무가 연계되어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한이 부여된 만큼 혁신도시 지정 및 활성화 관련된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주체를 변경하고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주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을 하며,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합니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무 수행의 이관 및 균형위의 행정위원회 개편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균형위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균특회계로 편입을 해서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혁특회계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균특회계와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균특회계와의 통합 시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라는 이를 위해서는 혁특회계의 근거 법률인 혁신도시법 및 균형위의 지위 변경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고, 특히 균특법 제5장 균특회계 부분은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이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운용 주체 변경이 곤란하다는 입

장이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도 통합에 신중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은 지난번에 심사를 했고 이번에 안 한 것도 있는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지난번에 했던 것들은 짧게 짧게 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들 중심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논의된 쟁점 중심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9번부터 12번까지는 지난번 논의할 때 이철규 위원님께서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혁신도시로, 지난번에는 ‘우선적으로’라는 이런 표현으로 원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앞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원칙은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되, 저희가 대안을 좀 마련했습니다.

‘혁신도시로’가 아니고 ‘혁신도시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문구를 좀 수정하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속 연구기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전 대상은 혁신도시법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상충하는 부분들도 있고 부속 연구기관까지 포함하는 부분들은 공공기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전 신설 공공기관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게 저희 정부 입장이고, 다만 신정훈 의원안 중에 이전기관이 ‘신규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균특법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앙행정 및 부속기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에 입지선정 절차 관련해서는 그 기관의, 최인호 의원안에서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정관 이전에 사전에 인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공운법상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후 정관을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신정훈 의원안에서 나온 것처럼 신규 공공기관 설립 단계에서, 입지를 마련하는 그런 단계에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군특법에 이 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군특법이 일반적으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개별법, 예를 들면 혁신도시법과 지방대학법에서는 의무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군특법 12조에 이미 관련된 정신과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 12번·13번 관련입니다.

13번도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는데, 지역균형뉴딜 관련 개념에 대한 문제하고 절차적 문제 두 가지를 지난번에 논의하면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신 절차적 문제는 저희가 현 법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의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균형위에 심의·의결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현 체계에서도 이런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이게 통상적인 예산 절차가 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에서는 원칙만 담고 절차적인 내용을 담는 것으로 이미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쟁점이 되었던 것들은 지역균형뉴딜 개념을 굳이 입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 한국판 뉴딜과 연계된 지역균형뉴딜의 지속적인 추진과 또 한국판 뉴딜이 담고 있고 지역 뉴딜이 담고 있는 디지털경제와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그런 추진을 지역에서도 안정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

마지막으로 초광역권 관련 사항들은 아직 첫 번째 논의이기 때문에 제가 쟁점 몇 가지 중심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초광역권 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행에는 기초생활권, 광역협력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초광역권’으로 편성하는 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검토의견에서 주신 것처럼 기초생활권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게 근거 조항이 되는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당초 있었던 산업 측면에서도 광역협력권 산업이 있는데 이것도 초광역권 산업이라는 내용으로 좀 포괄적으로 포섭하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광역권계획 수립 주체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처의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산업부도 의견이 있고 또 관련 부처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핵심 내용 중의 한 가지가 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위가 여러 부처의 일을 하고 조율하고 조정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가 하는 것보다는 현행 위원회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관련 부처도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특회제도 행정위원회의 격상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 입장에서 다부처가 현재 체계에서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정부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지난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이미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제 지방에 시도별로 혁신도시가 다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혁신도시 등’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기관 또는 공

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고양했습니다, 이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나 하면 지방 지역 내에서, 지방도시 내에서 다시, 그러니까 지방도시 예를 든다면, 쉽게 강원도를 예로 든다면 그전에는 태백·정선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던 분들이 이제는 혁신도시인 원주로 전부 다 갑니다. 결국은 지역에 수도권을 대신하는 거점도시를 만들어 준 것 이상, 다른 정말로 소멸되고…… 그런 도시들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여건 또 그 외의 환경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지역의 도시 존립이라든가 발전이 가능했던 지역들이거든요, 대개가. 이제 어찌 보면 새로이 작은 포식자가 돼 버린 거예요, 지방권역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이것을 ‘혁신도시 등’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수도권으로 이전해서 지역이 소멸되는 것이나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로 유출되면서 소멸되는 것이나 대다수…… 그냥 열몇 개 혁신도시 외에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더 심화돼요, 이게 수도권으로 오는 것보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기관 또는 기존에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규정 정도를 여기에 삽입하는 것으로 대안을 한번 내 보고자 하는데 정부 측의 입장이란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게 ‘혁신도시 등’이 빠지고 그냥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안 되나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위원님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은 지방의 거점 클러스터로서 거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 때문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동안 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넣은 것은 그런 원칙을 견지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그 지역의 여건이 맞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한 기관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적합하다고 했을 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오픈해 놓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혁신도시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고 다

른 지역으로 이전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게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는 사실상 지역에서는 거점도시가 다 됐어요, 거의. 거점도시로서 기능도 하고 다 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새로이 이전하는 기관들은 그 기관의 입지 여건이 어디가 제일 적합한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을 열어 놓는 것이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위원님 취지도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철규 위원 그러면 이 법을 발의하신 법안 발의자의 입법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꾸 혁신도시 위주로 간다면, 수도권 위주나 혁신도시 위주나 무엇이 다른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혁신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거기에 공공기관도 있고 또 필요하면 연구소도 있고 대학도 같이 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형태의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전하는 기관이 기존에 있는 클러스터 외에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른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좀 더 개발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다른 정책으로, 낙후지역이라든가 신활력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보완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혁신도시가 꼭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방도시잖아요. 다 포함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항만과 관련된 기관이라면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항만이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게 맞을 것 아니에요?

초창기에 이런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할 때는 그런 클러스터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저는 수공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를 지났잖아요. 사실상 거점도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혁신

도시 중심으로 대개 보면 도시가 발전하고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돼 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외의 지방도시로 간다고 해서 혁신도시에 못 간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을 포괄적으로 열어 놓자 이런 취지의 제안입니다.

이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거의 한 15년 그리고 실제로 이전이 시작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여전히 지방소멸이랄까 또 혁신도시의 안정화가 지금 아직도 미흡한 상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어찌 보면 혁신도시 정책의 후속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말씀도 지방도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혁신도시 정책,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성과 목적성을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개별 도시로, 애시당초 참여정부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개별 입지를 가지고 160개 기관이 각자 도시를 찾아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집중해서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이 그때 논의됐을 때도 지역의 거점도시로 만들어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성장의 거점을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여전히 거기에서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수도권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과연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직 다 완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 자체는 여전히 낮는데 그 이유가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아직도, 집중돼서 간 그 도시도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별이전을 하게 된다면 애시당초 혁신도시 조성 초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는 시도별로 n분의 1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도 전라도도 대구광역시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지방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각기 230개 자치단체가 개별 이전을 목표로 해서 경쟁을 한다면 아마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결론을 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권은 어떤 기관이 가야 되는가, 대구권은 어떤 기관이 가야 되는가, 전남권은 어떤 기관이 가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숫자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의 형평성은 맞출 수 있는데, 이걸 개별 입지를 통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하게 된다면 아마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보낸다고 해도 어려운 일을…… 개별 자치단체가 경쟁해서 수도권에 있는 신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다만 그 해당 광역행정단위에서 의사결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더 특성화하고 좀 더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혁신도시로 가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균형발전에 역행한다 그러면, 아예 서울·수도권으로부터 지방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 모를까, 지금까지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설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가는 것이 나는 합리적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혁신도시와 함께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문제를 아예 제외하자 하는 것은 아직 혁신도시의 실정을 너무 성급하게 보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를 위주로 가야 되지만 기관의 특성상 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외의 방법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본 의원이 발의한 안을 좀 더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양금희 위원님.

○양금희 위원 저는 산업부 법안소위로 오늘 처음 넘어와서 기존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혹시 그것을 놓치고 말씀드리거나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

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의 취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예전에 추진해 왔던 혁신도시의 제2단계 발전방안이라는 취지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의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혁신도시라고 하는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했었던 이유가 수도권에 사시던 분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주 여건을 아마 수도권과 비슷하게 만들어 드려서 내려와서 잘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기 시작한 게 15년 그리고 실질적인 이주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각 지방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혁신도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구에도 혁신도시가 있어요. 거기랑 또 경상북도 김천에 가면 혁신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진주에 혁신도시가 있고 나주에 혁신도시가 있지요.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저는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산업부 측에서 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이전되어서 산업 생태계별로 내려온 관계 기업들이 얼마나 서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에 경제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주시면, 저희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사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원주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서 원주에 또 보금자리를 만들게 됐을 때 다른 지역의 소외 문제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 등에 대한 자료들을 놓고 저는 좀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차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일응 여러 가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혁신도시가 처음 시작될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기는 한데, 저희가 모델로 삼았던 것들은 예를 들면 서유럽에 있는…… 핀란드에 있는 오울루라든가 프랑스의 앙티폴리스 같은 그런 혁신도시들을 저희가 염두

에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그 단계에 이르기에는 아주 한참 멀었다는 얘가지요. 단순히 그런 클러스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을 강제적으로 좀 이전을 시킨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이 되었지만 아주 초기 단계의, 이름은 혁신도시지만 혁신이라는 내용을 붙이기에는 아직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건설을 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성격도 조금 다르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혁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전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씩 자리를, 일부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조금씩 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지만 목표치에는 아주 한참 멀었고,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18조의 규정이 제목 자체가 공공기관의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입니다. 그 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그 원칙을 좀 만들면서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논의가 되는 것들은 신설되는 공공기관 자체를 어디로 이전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을 좀 만들자 그런 게 이번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을 여기에 담되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한 기관 이전이 필요하더라도 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평가 부분은 관계부처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이런 부분의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것 하실 때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랑 의논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관계부처가 같이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금희 위원** 그런데 왜 지역별로 그렇게 편차가 심한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처음에 기관 이전을 할 때 편차가 심하다기보다는 거의 같은,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혁신도시에 어떤 기관이 갈지에 대한 것을 균형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차관님한테 오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윤호중 여당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정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실지에 관해서 듣다가 제가 보니까 각 지방별로 이번에 대구·경북 이런 것에 대해서 각자 지방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것 보면서 제가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제대로 다 협의가 돼서 이런 발표를 하셨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뒤에 가면 또 지방뉴딜 관련한 법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과 결과적으로 다 연계선상에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나 산업부가 각 산업을 지방에다가 분산시킬 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통계를 가지고 분산시켰는지, 예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확실한 통계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면 지방기업·공기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산을 시킨 건지 아니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지방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전시켰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궁금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이전시킬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전시킬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냥 이 문구만 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산업부가 이것을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무부처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산업도 저희가 분산을 시킨다기보다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주력 산업을 육성을 하고 주력 산업을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을 저희 산업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는 거기에 맞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국토부에서도 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아니요, 잠깐만요. 그렇게 판단을 차관님이 하시면 안 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규 위원** 저기……

○**소위원장 강훈식** 잠깐만요.

이게 자꾸 논의가 이상하게 확대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법안 심사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이 여기에 없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 혁신도시법에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혁신도시에 우선해서 하고 다른 지방하고 충돌이 안 되도록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소위원장 강훈식**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신설되는 것에 한해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위원장님 그렇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위원님들도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리는 것은 기존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신설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의가 너무 예민하게 가는 것 같아서요.

이철규 위원님 말씀 들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안을 내시고 또 최인호 의원님도 이 의견을 내셨고요. 또 서삼석 의원님, 홍문표 의원님이 전부다 관련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타협을 해서 결국은 새로 신설되는 기관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이 법이 없다면 수도권에 신설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도권 이외의 지방도시로 이렇게 막 규정을 한다면 혁신도시라든가 모든 산업위기대응지역이라든가 고용위기지역이라

든가 어디든지 다 포함이 되는, 이것을 다 포섭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배척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혁신도시가 경쟁력이 더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전남으로 간다 하면 전남 내에서 경쟁을 할 때 나주가 더…… 예를 든다면 구례나 여수보다 여기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나주로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신설되는 기관의 성격 또 이런 것들이 혁신도시 외에 우리 전국을 놓고 볼 때 어디가 제일 적지인데 다만 혁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서 간다는 것은 좀 뭐하겠나.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인데요. 지방으로, 이게 혁신도시 이전할 때…… 경찰청 산하에 도로교통공단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이 몽땅 원주혁신도시로…… 도로교통공단은 원주혁신도시로 정해져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산하기관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 쪽 빼 가지고 울산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하면 원주에서 회의를 하는데 울산에서 원주까지 회의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한 개 기관 산하의 또 밑의 기관이, 부속기관이 말이지요. 웃지 못할, 사실 어찌 보면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결여되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가 버린 겁니다.

이제 혁신도시로만, 이게 ‘혁신도시 등’으로 한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법 조문이라는 게 형식이 때로는 질을 굉장히 압도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등한 조건을, 그냥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도시들을 봐서 이 기관이 어디 들어가는 것이 제일로 입지 여건이 좋겠는가 이것이 고려돼 가지고 신설되는 기관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수소산업이 계속 진흥돼 가지고 관련된 기관이 새로 생긴다면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수소와 제일로 관련성이 높고 한 지역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이고요. 또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등 이게 규모가 커지고 하게 되면 또 관련 기관이 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공공기관은 예를 든다면 지금 전남 지역의 해상풍력이 많이 들어가

고 태양광이 제일 많은 그런 지역 내로 가는 것이, 그쪽 지역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 내에서 그러면 나주가 나오나 무안이 나오나 결정하는 것은 지역 내의 문제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혁신도시 등’으로 하지 말고 발의해 주신 신정훈 위원님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좀 열어서, 수도권 외의 지방도시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혁신도시가 제외되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고, 그렇지만 그 경쟁력에서도 혁신도시가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신정훈 위원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아까 양금희 위원님께서 과거에 참여정부가 시도별로 배분할 때 어떤 기준이었냐 그러는데 실제로 특성을 따졌고 n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전혀…… 한 곳에다가 에너지를 다 모으다 보면 한 곳에 너무 많은 기관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이질적인 기관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n분의 1이라는 것은 광역행정 단위에서 이렇게 했었던 것이고.

왜 지금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광주와 전남은 광역행정 단위가 달랐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 정도 혁신도시 가지고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광주하고 전남은 하나로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광주·전남에 혁신도시는…… 대구·경북은 두 개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집중의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왕 지금 초광역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이 힘을 분산해서 산업을 키워 나가기에 너무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원칙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만약에 지방 자율

로, 소위 말해서 지방도시가 지금 벌써 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중소도시가 다 지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지역별로 자치단체 간에 민간 합동 그런 연대도 서로 하고 막 이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중앙이 주도하지 않고 지방 자율로 그렇게 맡겨 놓게 되면 굉장히 또 그런 어려움이…… 앞으로 과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마지막으로는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몸만 가 있지 실제로 가족들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도저히 정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주같은 경우 두 개의 혁신도시를 집중했는데도 여전히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이 아주 심해서 여전히 가족 동반 이주율이라고 하는 것이 50% 미만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과 그 기관의 특성을 살린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개방해 놓고 이전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 절충안들을 가지고 이 법안의 조문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철규 위원님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두 위원님이 그렇게 내셨으니까요.

다른 부분은 다들 동의하시는가요, 다른 부분은 말씀이 전혀 없으셔서?

이주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 다른 부분 말씀드리려니까, 지금 위원장님 것이라서 조금 걸끄럽기는 합니다마는……

○소위원장 강훈식 예, 말씀하세요.

○이주환 위원 19페이지의 지역균형뉴딜 개념 정의 관련해서 정부 의견이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로 잘 되기 위해서는 용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행법 체계 내에서 지역균형뉴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없다고 해서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주환 위원 그리고 여기 심의기구가 등장을 했는데 심의하는 내용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 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그래서 앞서 절차적인 면에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설립하지 않고 대신 이 내용 자체를 균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주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용어에 대한 정의만을 내리는데 확장 개념인 지역균형뉴딜이 한국판 뉴딜에서 확장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주환 위원 저번 소위 때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한국판 뉴딜이 정의되거나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지금 법제화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환 위원 그래서 이게 뭐가 앞으로 뒤냐를 보면 좀 선명한 게 한국판 뉴딜정책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법제화를 해서 어떤 이익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K-뉴딜이 내용부터 법제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여기 뒤에 법제화가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 법률을 개정하고 만들 때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이 부득이하게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같으면 반드시 법률에다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헌법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균형뉴딜 사업 관련해서는 이 법 안에 정의가 되든 안 되든 착착 잘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상위 내용에 한국판 뉴딜사업도 정의라든지 법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개정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상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여러 가지 분야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법체계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지속성이라든가 또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한데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논의 구조가 있고 또 다른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또 정부의 의지와 지방의 의지가 같이 결합돼서 추진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를 좀 더 담는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잠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의지를 담은 내용들이 법제화됨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산자부가 또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21페이지에 보시면 조항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확장이라고 설명을 해서 정의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자부에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각 시도에서부터 이 공모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 법으로 이후에 사업을 더 벌여 보자라든지 이런 취지는 아닌데 이미 되고 있고, 가령 부산도 충남도 이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예산을 따려고 시군구가 지금 다 줄줄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발의했을 때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기하고 있는 사업과 특히 올해 하반기, 내년에 예산들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법적인 제도가 미비해서 일선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뒷받침하려고 만드는 법이고요.

그리고 저도 지방 의원입니다만 지방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의미 부여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 해서 그런 스마트 스쿨도 만들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하고 로봇공장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자 이런 취지니까요.

아마 산자부차관님이 대답하시기 좀 어려운 것들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는 우리 부처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환 위원님한테 제가 직접 대답해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취지로 '이미 가고 있는 사업이다, 안타까운 것은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법안에 대해서 말씀 편하게 해 주십시오.

○양금희 위원 제가 조금……

○소위원장 강훈식 예, 말씀하십시오.

○양금희 위원 강훈식 의원님이 발의한 법이니까.

저는 지금 아직 지역균형뉴딜사업의 개념이 확실하게 안 들어오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제도적으로 미흡해서 어려움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법을 발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강훈식 지금 올해 예산에 지역균형 뉴딜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행안부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요 특교에만 300억 정도를 따로 잘라 가지고……

제가 부처 공무원처럼 대답을 하게 되는데, 특교에만 300억을 따로 별도로 떼 가지고 지금 이미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 기초단체 중심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 구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예는 수없이 많지요.

○양금희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예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뉴딜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지방에서 중앙정부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강훈식 공모사업 말고 이 지역균형 뉴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양금희 위원 그러니까 뉴딜사업도 마찬가지로인데요. 지방에서 신청해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 법이 없었을 때 진행이 더디게 된다는지 어렵다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제가 조금 안 돼서 여쭙어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강훈식 정확하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서 지역경제에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인 거지, 그게 없다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군발위의 법안으로 만들면 제도적으로 아예 뿌리 내리게 해서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거 안 해도, 새로운 정부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니까

법안을 발의한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도움이 될 거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좀 별로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지금 통계를 받아봤는데요. 내년도 예산사업이 한 270개 정도가 되고요. 지역에 있는 지자체 전체 사업을 다 모으면 270개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13.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 대부분이 행안부 주도로 하겠지만 또 일부는 관계부처들이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단시간 내에 또 다음에 또 내년이 지나고 내후년이 지났을 때 계속해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지를 좀 담아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지금 제가 계속 듣는 이야기는,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의지를 담기 위해서 이 법이 발의된 취지라고 얘기를 계속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썩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계속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소영 위원님도 발언하십시오.

**○이소영 위원** 바로 직전에 저희가 산자법안소위 할 때 통과시킨 법 중에서도 전기사업법 개정안인데, 사실은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로 인해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소방 측면에서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금도 안전과 화재 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막혀 있지는 않은데 그것을 보다 명확히 했을 때, 예컨대 소방청이 산업부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훨씬 더 원활하게 요청할 수 있고, 그 법적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상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사실 산자법안소위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공감대가 있어서 워딩은 수정했지만 어쨌든 그 개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양금희 위원** 지금 이소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니까 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안을 검토할 때 이 법이 없어서 그 예산사업이나 실제 사업이 불가능할 때만 그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사실상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짐으로 인해서 대구든 부산이든 각 지역에서 훨씬 더 이 문제…… 지역균형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사업과 국가 국책사업에 대한 니즈는 클 텐데 그런 것들을 더 원활하고 쉽게 요구하고 진행하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입법의 필요성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견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양금희 위원** 그것도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많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이 없습니까, 뒤에 엄청 큰 게 그냥 막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이견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양금희 위원** 저는 있습니다, 초광역권.

**○소위원장 강훈식** 말씀하세요.

**○양금희 위원** 자꾸 말씀드리어서 되게 송구합니다.

초광역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올라왔는데요. 초광역권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환경 문제에 관련된 사항들은 현재 행정구역상을 넘나드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이 같이 행정 경계를 넘어선다든가 아니면 어떤 데에서 일어난 일들이 옆에 있는 시도 또는 기초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산업들 내지 산업 육성하는 것들은 옆에 있는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권역을 넘어서는 형태의 그런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주체를 또 명확하게 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하자.

예를 들면 부울경에서 사업을 같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자치구역으로 만들어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과거에는 기초단체 그다음에 광역단체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권역을 나눴는데, 기초단체는 저희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기초단체 플러스 광역으로 해서 행정권역을 넘나드는 형태를 만들고 또 산업도 그런 형태로 육성을 하자 이게 전체적인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렇게 해서 발의가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은 관련 부처 간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 부분 양금희 위원님 의견은요?

○양금희 위원 앞으로 더 봐야 되는 부분이라 궁금해서 여쭙봤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오늘 다 보신다고 그러시면 어떡하세요, 회의를 하기 전에 보고 오셨어야지. 다 처음부터 본다 그러면, 여기 다 논의하고 온 사람들은……

○양금희 위원 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양금희 위원 예.

○소위원장 강훈식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정훈 위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소위원장 강훈식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초광역권이라는 개념인 거고 행정상의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닌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뒤에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하고, 사실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는데 그 추진 주체를 어디까지 해서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근접해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기본적으로는 근접을 해야 되지요.

○조정훈 위원 광주하고 대구하고 같이하겠단, 초광역권으로 묶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더 선호를 하는 거고요. 아마 그

런 형태들이, 초광역권 산업이나 초광역권으로 해결해야 되는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근접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런 초광역권이 활성화 되면, 중장기적인 겁니다, 아마 행안부장관님이 더 적절할 수 있는데. 지방의 자치, 지방분권화는 증진이 될까요, 아니면 중앙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저는 증진된다고 봅니다. 초광역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만약에 3개 지자체가 같이하겠단다고 하면 3개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치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조정훈 위원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하고, 정책실험을 세계은행에서도 해 봤는데요 초광역권은 중앙집중화를 초래합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초광역권이 갖고 있는 개념이 진짜 말단의 기초자치단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초광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년, 10년 해 본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의식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격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차관님, 지방분권화는요 죄송합니다만 원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분권화를 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지방분권화를 하면 격차는 생깁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과제지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개념이 왜 나왔느냐는 알겠지만 결국은 중앙의 힘이 강해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해외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초광역권은 기존의 광역권을 유지한 채로 핵으로 남겨 놓고 그 나머지를 아우르는 다핵구조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해 보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초광

역권 개념 신설 관련해서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그것은 이견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견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소위원장 강훈식 예,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을 종결하고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9번부터 12항까지 최인호·서삼석·신정훈·홍문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로 아까 의견이 모아지신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한 것은 저는 좀 통과시켜 달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주환 위원님이랑 양금희 위원님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이거는 좀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저도 지금 이 법안을……

○소위원장 강훈식 아니,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가 됐는데……

○양금희 위원 제가 처음 왔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게 있는지 상황을 좀 체크해 보고 싶어서요.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세 번 네 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철규 위원 오늘 많이 논의했으니까 다음 기일에 하고, 양금희 위원님이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오늘 말고 다음번에……

○소위원장 강훈식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금희 위원 저는 처음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처음 왔으면 다 처음 하나?

○이철규 위원 다음 기일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냥 계속 심사로 일단 남겨 놓지요.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오늘 국가균형발전법 하나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철규 위원 균형의 날만.

○소위원장 강훈식 아니, 결국 전임 소위원장님

이 한 것만 하고, 진짜 너무 한 거 아니냐……

○이철규 위원 위원장님, 좀 절충을 해 주셔서……

○소위원장 강훈식 아니, 그거는 절충하시고, 절충하고.

○이철규 위원 아까 중요한 것이 기관 이전이니까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 가지고 좀 수용하라고, 그게 제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강훈식 지역균형뉴딜은 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야당 위원님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양금희 위원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철규 위원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보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소위원장 강훈식 아니, 그런데 집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음번 법안소위가 언제 될지도 몰라요.

○이철규 위원 빨리 하지요. 수시로 하자고요.

○소위원장 강훈식 수시로 하자고 지난달에도 해 놓고 안 하셨어요.

○이철규 위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어. 통과율이 높은 데니까……

○소위원장 강훈식 지역균형뉴딜은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국가균형발전법의 두 개는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사님?

양금희 위원님, 처음 보셨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이것은 절대 안 되겠다 이런 것 아니면……

○양금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것 굉장히 고민 많이 하면서 법안을 읽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동의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한 기일만 뒤로 미뤄 봐 보시자고요.

○양금희 위원 한 번만 더……

○이철규 위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한 기일만 주시고요 뒤에 통과시켜야 될 게 많잖아요.

○소위원장 강훈식 뒤에 통과시킬 것 없는데, 이것 안 하면 오늘 네 개인데 이 법안……

○이철규 위원 지금 뒤의 15번부터 17번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묵은 것부터 빨리 처리를 하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초광역권 개념 신설도 동의 못 하시고?

○이철규 위원 그거는 부처에 이견도 지금 많은

것 같으니까 같이 그 법을 정리를 해 가지고……

○소위원장 강훈식 부처에 이견이 있어서 안 되고, 부처 내 이견이 없는 것도 안 해 주시고. 지역균형뉴딜, 부처에 이견이 없어요.

○이철규 위원 위원님이 한 기일만 더 논의해 보자고 하시니까 그렇게 좀 양보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다음번에 공부 안 해 왔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양금희 위원 저 공부 안 해 왔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처음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농담입니다.

다음번에는 꼭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양금희 위원님 주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과는 균형발전의 날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7항까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이 세 가지 제정법안은 지난 네 번의 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쟁점은 소화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께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논의만 마치시면 의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소위에서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내용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엄청 많이 논의가 됐는데 또 처음 오신 두 분 의견 여쭙볼게요.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양금희 위원님의 그 이틀을 저

도, 그 카드를 쓰고 싶은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데이터 생성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아까 부처에서 의원실에 와 주셔서 상세하게 한 시간 이상 설명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다만 저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산업데이터에 대한 생성에서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발생한 사람들이 이제 산업데이터의 소유권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 산업데이터의 경우는 완벽한 정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서비스업으로 상정되는 개인데이터가 산업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헬스 사업을 하는 앱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논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문제는 개보위로부터 문제없다는 의견을 접수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또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내가 만든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보상은 앞으로 부의 균형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그 면에서 이 법안이 한 단계 나간 것은 맞지만 산업데이터 생성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1차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을 닫아 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 분들에게 부칙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부처에서는 부칙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칙안이 고민이 되셨는지요? 제가 그래서 한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마이데이터 같은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정부 내에서 큰 틀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데이터 중에서 의료정보데이터는 또 아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조정훈 위원 의료데이터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의료데이터는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발전법에 따른 그 산업의 명단에 헬스산업 등등 서비스업들이 다 들어 있고 순수하게 기계가 생산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국민이, 사람이 원천데이터를 만들고 이것을 모집해

서 개인정보를 산업데이터화 시켜서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인데, 윗단에 거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저는 지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아랫단에……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지요? 이 가능성……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개인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을 그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 내지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가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습니다. 제3장 제9조 5호 보면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누구냐의 정의에 산업데이터 생산을 어떻게 정의하면 헬스 앱을 사용한 개인은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법이 되면 개인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집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는 논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그 가능성을 닫아 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셨던 실장님 두 분이 그 얘기를 이해하셨고 부칙조항을 한번 고민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상모 아까 오전에 실장님하고 제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가 법리 검토를 했습니다. 법리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소비자, 종업원 등 이런 경우에 개인들입니다. 그것을 그런 데이터 제공자 또는 생성자까지 볼 수 있는지도 법리적으로 이슈가 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용·수익권을 인정할 것인가 등등의…… 그런 권리의 범위를 조문화할 것인가 아니면 특례로, 아니면 해석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를 아마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 이런 논의는 지금 정부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해서 통합적·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런 논의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정도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그런 권리들을 논의하는 것을 확장하는 것을 저해할 것이냐가 문제 될 텐데 저희 검토에 따르면 저해를 한다는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오늘 검토한 것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의 논리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개보위는 개인정보와 인포메이션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를 다루는 것이지요. 개인이 만든 정보에 대한 부가가치를 정보 수집자와 공정하게 나누느냐를 다루는 부서가 아니에요. 제가 개보위 위원장님하고도 여러 번 이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 관련된 법안도 발의한 적이 있고요. 저는 민법의 물건에 데이터를 넣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에 가장 1차 데이터 생산자인 개인이 포함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상모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기계가 생산한 데이터가 아닌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가…… 그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에 개인이 이해관계자에 포함되니까? 헬스 사업을 하는 앱을 활용한, 음식배달업에 음식을 주문한 개인이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상모 저희 법체계에……

○조정훈 위원 ‘예, 아니오’로 그냥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상모 법안 체계에서……

○조정훈 위원 이 법안에 의하면 ‘예’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상모 저희 법안 체계는……

○조정훈 위원 아니, ‘예’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상모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 아니오’로 답변하기가 힘든……

○조정훈 위원 ‘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상모 이  
해관계자의 범위에 개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드시는 사례에서 모두……

○조정훈 위원 어떤 근거로 포함될 수 있습니  
까? 무슨 조항으로? 저는 포함될 수 없다고 확신  
합니다. 저도 법률 자문을 구해 봤는데요 이 법  
이 이대로 가면 앱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이해관  
계자가 되십니다. 그 회사가 ERP를 깔아서 IT회  
사와 데이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 반  
대하지 않고요. 그래서 산업데이터가 점점 활성  
화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나오  
기를 원합니다.

다만 여기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수많은 앱을 사용하고 엄청난 양의 데  
이터를 제공하는데 그분들이 산업생태계의 이해  
관계자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는 법  
안에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소영 위원님 발언 신청 계  
속하셨는데……

○이소영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  
어 가지고, 부칙은 어떤 부칙…… 무엇을 위한  
부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정훈 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산업  
데이터를 생성한 일반 국민들도 이해관계자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1차 데이터 생산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인 경우  
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은 저도 무  
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고요.

○조정훈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의  
경우에……

○이소영 위원 그게 왜 부칙의 문제일까요?

○조정훈 위원 아니면 저는 산업데이터 생성에  
대한 정의 자체를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유지하시면서 특히 이 문제가  
서비스산업, 여기 2조 1호에 나와 있는 서비스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활동의 경우에는 서  
비스에 참여한 일반…… 뭐라 그럴까요, 소비자?  
이 경우도 이해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은 제가 이  
해하고.

기존에 산자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네 번 논  
의가 됐었고……

○조정훈 위원 제가 이 데이터법 다 읽어 봤습

니다.

○이소영 위원 회의록도 다 읽어 보셨어요?

○조정훈 위원 예.

○이소영 위원 그 말씀하신 문제 제기를 류호정  
위원님이 하신 적이 있고……

○조정훈 위원 류호정 위원님에게도 다 들었습  
니다.

○이소영 위원 지난 소위 때 거의 한 시간인가  
두 시간 정도 논의하면서 사실 이 얘기가 소위에  
서 여러 번 반복됐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앱을 만든 사장님도 있고 그 앱을 사용한  
일반 국민도 있는데 지금은 이 두 주체가 다 보  
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잖아요, 법제도가 정비되  
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 법에서 일차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앱을 만든 사장님에 대한  
권리를 일단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류호정 위원님이 예전에 소위에서 말쑈  
하셨던 것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 앱을 이용한 일반 국민에게도 그  
데이터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어  
야 된다는 문제 제기로 보이고 그것은 데이터  
기본법의 검토 과정에서 지금 쟁점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한 게 맞  
는지 여쭙보자면 이 법을 통과시키면 지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두 사람, 앱 만든 사장님, 일반  
국민 중에 일단 앱을 만든 사장님에 대한 보호가  
일차적으로 먼저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업용  
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다양한 데이터를 스스  
로 생성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보다 더 일반적  
인 기본법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의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어디까지 형성할 것이냐 그 제도 정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인정된다,  
10만쯤 인정된다, 20만쯤 인정된다 그게 확정이  
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인정하는 규정이 이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법  
상 앱을 만든 사장님이 데이터 기본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락한 일반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부칙에 없더라도 제도  
적으로.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조정훈 위원 일부는 맞습니다. 법리적으로 방  
법을 찾을 수 있으면 저도 찾고 싶고요. 제가 소  
위 바뀌어서 일부러 브레이크 걸 의사는 전혀 없습  
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은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앱은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앱도 해당될 수 있고요. 제가 읽은 문건들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공장 소유주 같은 분들이 자신들의 아날로그 프로덕션을 디지털화하면서 만든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저것은 동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는 게 이 법의 정신인데,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데이터의 생산 또는 활용에 관여해야 되는데 이 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산 주체를 산업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한 사람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앱을 쓰는 일반적인 국민이 과연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소영 위원 몇 조에 있는 이해관계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3장 9조. 제 법안으로는 12페이지고요.

○이소영 위원 이 심의자료에선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가요?

○조정훈 위원 116이라고 하시네요, 양의원영 위원님께서.

118의 5항을 보시면요. 조정식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의 안을 동일하게 봐도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 한다’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요, 활용은 활용이 명백한 거고요. 5페이지의 2조의 2호를 보시면 ‘산업데이터 생성이란……’해서 정의를 총칙에서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닫는 겁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욕사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두 법이 충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에서 우리가 나중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데이터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요청드리는 것은 그 가능성을…… 지금 이게 두 단계니까 한 단계라도 커버하고 가자라는 제안에 합리적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다만 아랫단이라고 굳이 표현할까요, 이름하여 국민과 데이터 활용자들의 거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닫진 말자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이분들을 산업데이터 생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 해석의 여지가 어떻게 생기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왜냐하면, 3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소영 위원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91쪽 제2조 2호 산업데이터 생성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정부 관계자분들이 주신 법안인데요.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데이터 생성에 관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 국민이 앱을 사용하는 게?

○이소영 위원 이 산업데이터 생성 주체에는 앱을 만든, 그러니까 사업자가 해당이 되겠지요.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이소영 위원 일반 국민은 그 데이터를 집적하고 통계화하고, 예컨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니깐요. 그런데 다만 이해관계자라 함은 통상적으로 예컨대 산업데이터……

○조정훈 위원 통상적이 아니고 법률에 정확하게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생성과 활용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이해관계자가 되는데……

○이소영 위원 생성에 관여한 자가 아닌가요?

○조정훈 위원 아까 생성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소영 위원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일반 국민, 데이터 주체의 권리는 아직 보장하고 있지 않지요. 그 논의는 지금 다른 단위에서, 다른 층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118페이지에 있는 이 문구가, ‘데이터 생성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반 국민, 그 데이터의 주체가 빠진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정훈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최대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앱을 사용하는 국민이 있고 앱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실은 이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앱 운영자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은 일반 공장의 공장주와 공장

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데 기여한 IT 회사 간에 데이터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수익 분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법안이 맞고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지금 법안의 문구들이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계한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는 거고, 이 법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되는 게 우선인데 이해관계자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든지 활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활용은 나중에 얘기니까 일반 국민은 해당이 안 되고요. 산업데이터 생성인데 저는 산업데이터 생성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2조 2호에서 정의한 것처럼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한 것으로만 한정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산업데이터 생성 주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설명을……

○소위원장 강훈식 아니, 저도 잠깐……

근데 헬스 앱을 쓰는 순간 물적으로 기여하는 것 아닌가요? 인적으로 기여하는 것 아닌가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헬스 앱을 쓰는 사람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소위원장 강훈식 쓰는 것 자체가, 헬스 앱을 쓰는 걸로……

○조정훈 위원 그런데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소영 위원 관여에 해당할 수 있는……

○소위원장 강훈식 잠시만요. 차관님 말씀도 한번 들어 보고 이 논의를……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지금 두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관여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의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관여한 자의 권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 부여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해서 데이터를 만든 것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에 관여된 사람들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큰 틀에서, 개보법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 내에서 컨센서스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다고 해서 이 법이 앞으로 만들어지는 법을 침해하거나 제

한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선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개인에 대한, 거기에 관여했다든가 100만 분의 1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 논의를 통해서……

○조정훈 위원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개보법에서 그 권리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차관님, 이렇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법안을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으로 했지만 결국에 데이터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개인의 데이터는 언제 산업데이터가 됩니까?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훈 위원 아니,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개인의 데이터는 언제 산업데이터가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저희가 정의를 한, 통과한 내용 자체가 그때부터 저희 법에서 규정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뭐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정의에 해당되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n분의 1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의 생성에 관여된 개인들, n분의 1에 해당되는 그분들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 내용에 대해서 별도 논의가 있다는 거지요.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좀……

○소위원장 강훈식 일단 양금희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어요. 양금희 위원님 하고 이소영 하고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여기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산업데이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양금희’ ‘여성’ 이렇게 개별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자료는 사실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없

습니다. 지금 여기서 산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그 데이터들이 합성이 되거나 모여지거나 분산되거나 하는 어떤 가공 형태를 반드시 거친 데이터를 사실은 산업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지금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는 산업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데이터가 거기에 기여한 바에 의해서 어떤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법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데이터를 생성하게 해 준 기본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소득을 분배한다든지 아니면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따로 해야 되는 일이지, 산업데이터는 개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 변형이 되어졌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앱을 사용하는 생성자 자체가…… 거기에 기여하는 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소영 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조정훈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이소영 위원 일단 이 법에서 산업적으로 이 데이터를 생성한 사람을 먼저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하였고 다만 이 법의 특정한 문항이, 앞으로 데이터 생성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권리를 인정하는 어떤 제도가 훗날에 만들어졌을 때 그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그런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일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일단 이 조항의 취지를 먼저 보면……

○조정훈 위원 어떤 조항을 말씀하십니까?

○이소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9조 5항이지요.

산업데이터라고 하는 게 단독으로 수집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수집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 항에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예컨대 헬스 앱에서 수집된 것이 의료서비스와 연계해서 의료기관에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가 혼재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

생성·수집에 기여하거나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자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치 하도급계약 또는 어떤 특정한 계약에서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같은 것들을 반드시 체결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취지로 데이터 생성이나 수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계약을 가급적이면 체결해서 법률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돼요, 5항이.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걸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일반 국민들의 어떤 권리를 넣고 빼고와 관련한 것을 규정하는 규정으로는 읽히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규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추후에 데이터 기본법 등에서 헬스 앱에 오늘 걸음걸이 수를 입력한 개인들의 권리가 생겼을 때 그게 부칙이 없거나 또는 이 규정 그대로 되면 인정될 수 없느냐? 전혀 아니지요. 일단은 그게 신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산업데이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데이터 기본법에서 그 데이터 주체에 대해 일반적인 주체의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 이 법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우려가 현실적으로는 이 법과 관련된 실질적 우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정훈 위원 어쩌면 양금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조금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임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양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데이터와 산업데이터의 차이에 저는 해석이 좀 다른데요. 언제 개인데이터가 산업데이터가 되냐면 그게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개인데이터가 산업데이터가 됩니다.

산업데이터는 숫자가 많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아주 희귀한 병은, 12명이 갖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이 12명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한 의학적·부가가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를,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양이 많아야 산업데이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든지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지는 순간 그 개인데이터는 산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시면……

○양금희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산업데이터의 정의, 원래 데이터법의 산업데이터라는 정의가 아주 일반적인 것은 아닌데 제가 이걸 따라가 보면…… 각 법에서 산업의 생산·유통·소비 활동과정에 활용되는 거라고 규정했으면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부가가치를 위해서 활동되고 거래되는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가 산업데이터라고 한다면, 데이터의 생성에 관여한 사람들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던 사람들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정의해 버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관계자에 속하지 않고…… 저는 이 법이 원하는 정신, 아까 오전에 차관님과 담당관이 얘기한 그 정신은 달성할 수 있지만 어쩌면 뜻하지 않게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대다수 국민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산업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한 기여를 보상받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 먼저 하자고 하셨는데 실은 공장에서 만든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가진다는 것도 예전에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순가락을 만드는 공장에서 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그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가지고, 그 가진 부가가치를 거래를 함으로써 공장주가 부가가치를 가진다는 개념도 저는 발전이라고 봅니다만 거기서 더 나가서 그 얻은 가치를 사장이 다 가져야 되느냐? 일했던 노동자와 나눠가질 권리가 있느냐? 노동자의 주장은 사장의 너그러움에 기대야 되느냐, 아니면 정당한 권리로 인정을 받아서 떳떳하게 누려야 되느냐의 문제는 데이터주권 문제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저희가 그걸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조정훈 위원** 반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아니, 이 법에서 반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 부여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그런 권리라는 게 적극적으로 부여를 해야 권리가 인정되는 데 적극적인 권리 부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내에서 다른 논의의 장에서 논의를 하고 개보법에다 반영을 하겠다는 생각입

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법이 혹시라도 충돌할지 모른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타 법 개정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충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 법에서 하는 것들은 산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실제 활용하는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고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이터 주체에 대한 권리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담기도 저희가 어렵고, 그 담는 것을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논의가 될지 모르니 우선 산업에서 지금 당장 필요해서 분쟁이 되고 또 활용이 좀 미흡한 부분을 이 법을 통해서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데이터 주체에 대한 권리 문제는 아직 개념은 있지만 법적인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논의를 통해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이것까지 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계데이터의 경우는 논리가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요. 그렇지요? 기계를 소유한 기업의 주인이 데이터의 생성을 하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고 생태계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이해관계자 얘기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산업데이터의 생산에 기여하는 많은 산업들, 이 정의에 포함되는 수많은 산업들, 의료산업도 산업발전법 제2조에 포함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조정훈 위원** 수많은 산업들의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될 가능성들이 있는 문장들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법리상,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보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이 만든 데이터를……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권리를 보장하자는……

**○조정훈 위원** 부가가치의 권리인 거지요. 소유권과 정보메이션, 시큐리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류호정 위원님과 의견이 살짝 다른 편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러니까 충

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보법이 개인정보의 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주권에 대한, 마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앞으로 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개보법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부여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나중에 인정이 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이 그것을 방해한다든가 저촉된다든가 충돌되지 않으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상상을 해 보면, 법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되고, 산업데이터 생성을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헬스 앱을 사용하는 많은, 30만 정도가 있는 앱 유저들이 ‘이 회사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우리도 좀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앱 정도 쓰는 게 아니라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누가 손을 들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것은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걸 별도……

○조정훈 위원 그것은 반복이 되는데 이 법에 의하면 정확한 해석으로 아니다로 나옵니다. 아니지요. 다들 가능성을 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집단소송법은 아마 별도로 제가……

○조정훈 위원 집단소송이 아니고…… 산업데이터 생성의 주체가 아닌데, 이해관계자가 아닌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런데 저는 위원님의 관심과 컨선과 이것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모든 것을 담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법에서 그것을 규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을 이렇게 제안드리면 어떨까요, 차관님?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를 빼면 어떨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게 이 법의 핵심인데 그것을 빼면……

○조정훈 위원 그러면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했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혹시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 주권 내지 데이터에 관여한 개인들에 대한 또는 주체들에 대한……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부칙에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개보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주체가 되면 반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소영 위원 부칙이 해설서도 아니고 무슨 부칙에 담을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런데 부칙에 사실은 없는 법을 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요. 있는 법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우리 이철규 간사님 한 말씀하시고……

○이철규 위원 이 법안이 한 네 차례 그동안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요. 아마 조정훈 위원님께서 오늘 처음 논의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그동안 논의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아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훈식 예.

○이철규 위원 법은 조그마한 요소라도 불확실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만한 요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조정훈 위원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논의됐던 정황을 좀 보고를 받고 들으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한번 드리고 다음 기일에 또 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 법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고 이게 혹여나 개인정보가, 개인의 신상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가공돼서 상품화되면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논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고 또 이 법의 필요성도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에서 우리 조정훈 위원님을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정

리를 하시지요. 다음 기일에 처리하는 걸로……

○소위원장 강훈식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소위를 간사님이 같이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합의한 시간이 있었고 사실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랬는데, 오늘 법안을 더 논의해야 되고 또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 꼭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그런 논의들은 바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존경하는 양의원영 위원님이나 또 우리 부처에서도 오늘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법안들이 있는데 더 논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조정훈 위원님하고 양금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부처에서도 잘 감안하셔서 설명도 자세히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양금희 위원님, 필요하면 제가 가서 설명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가서라도……

○양금희 위원 제가 찾아갈게요.

○소위원장 강훈식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법을 무조건 빨리 통과시키자는 쪽은 아닙니다. 그건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좀 긴밀하게 우리 소위 위원님들끼리 서로 논의도 하시고 사실 오늘, 실명으로 말씀드리면 신정훈 위원님이 직접 가셔도 말씀 좀…… 보좌진들끼리도 이야기해 주셔 갖고, 왜냐하면 지방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사실 여기에 서울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수도권 의원이 우리 이소영 위원님 한 분 계신데 사실 지방균형발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소신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견들을 좁히는 노력을 위원님들끼리도 적극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소위는 이렇게 하고요.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11인)

|       |       |       |       |
|-------|-------|-------|-------|
| 강 훈 식 | 권 명 호 | 송 갑 석 | 신 정 훈 |
| 양 금 희 | 양의원영  | 이 소 영 | 이 장 섭 |
| 이 주 환 | 이 철 규 | 조 정 훈 |       |

#### ○출석 전문위원

|             |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채 | 수 | 근 |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제 1 차 관   | 박 | 진 | 규 |
| 제 2 차 관   | 박 | 기 | 영 |
| 소재융합산업정책관 | 최 | 우 | 석 |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김 | 상 | 모 |
| 지역경제정책관   | 김 | 현 | 철 |
| 중견기업정책관   | 안 | 세 | 진 |
| 에너지전환정책관  | 천 | 영 | 길 |
| 전력혁신정책관   | 이 | 원 | 주 |
| 원전산업정책국장  | 김 | 대 | 자 |

특허청

|               |   |   |   |   |
|---------------|---|---|---|---|
| 청             | 장 | 김 | 용 | 래 |
| 기 획 조 정 관     |   | 김 | 명 | 섭 |
| 국 가 기 술 표 준 원 |   | 주 | 소 | 령 |
| 표 준 정 책 국 장   |   |   |   |   |
| 기 획 재 정 부 장   |   | 강 | 준 | 모 |
| 지 역 예 산 과 장   |   |   |   |   |
| 국 토 교 통 부     |   | 박 | 명 | 주 |
|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   |   |   |   |